기타 업무 관련 신청 매뉴얼

(화약류 해당여부/기술검토 등)

- 화약안전처 -

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

Guns & Explosives Safety Technology Association

【 목 차 】

1. 신청 안내 ····· 3

2.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····· 5

3. 신청서 유의사항 ····· 6

4. 참고사항 ····· 7

1 신청 안내

□ 신청 안내문

○ 화약류가 혼합되어 있는 물건(용품)을 제조·판매 등 취급할 경우에는 총포・도검・화약류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되어 있음.

○ 이에 따라, 소화기 제작 등과 관련 인허가 부처에서 화약류 해당여부를 판정받아 오도록 하고 있고, 우리 협회에 화약류 해당여부 검토 의뢰를 하는 사례가 있음.

○ 우리협회는 화약류 해당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은 없으나, 화약류 안정도시험 등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임을 감안하여, 화약류 해당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
○ 화약류 해당여부 판단은 총포・도검・화약류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,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 및 '국제기준에 따른 시험결과'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고 있고, 비용은 화약류 안정도시험에 준하여 150만원(부가세 제외)을 징수하고 있으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함.

○ 고체에어로졸 소화기 제품의 경우, "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"이 제정・시행되면서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10, 시행 2021. 9. 30., 소방청고시 제2021-33호, 2021. 9. 30., 제정) 제3조제2호에서 "'고체에어로졸화합물'이란 과산화물질, 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의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을 말한다."로 정의하였으며, 이는 혼합화약(폭약)의 기본구성과 유사함.

○ 우리협회는 이를 참고하여 화약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국제기준에 따른 시험결과 등을 참고하는 등 판단기준을 정비하였으며, 요구하는 자료(국제기준에 따른 시험결과 등)가 제출되지 않아 판단이 어렵거나 별도의 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'판정 불가'로 판단함.

○ 화약류 해당여부 판단에 필요한 '국제기준에 따른 시험을 포함한 별도의 실험이나 연구 등'은 인력・시설・장비・예산상 문제로 협회가 직접 수행할 여건이 되지 않으며, 업체에서 진행하여야 함.

□ 신청 대상

○ 검토대상 물질(제품)이 「총포화약법」에서 정한 화약, 폭약 또는 화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협회 의견서를 받고자 할 때

○ 화약류 물질(제품)에 대해 기술검토를 받고자 할 때

○ 화약류 물질(제품)에 대해 위탁 기술지원을 받고자 할 때

□ 관련 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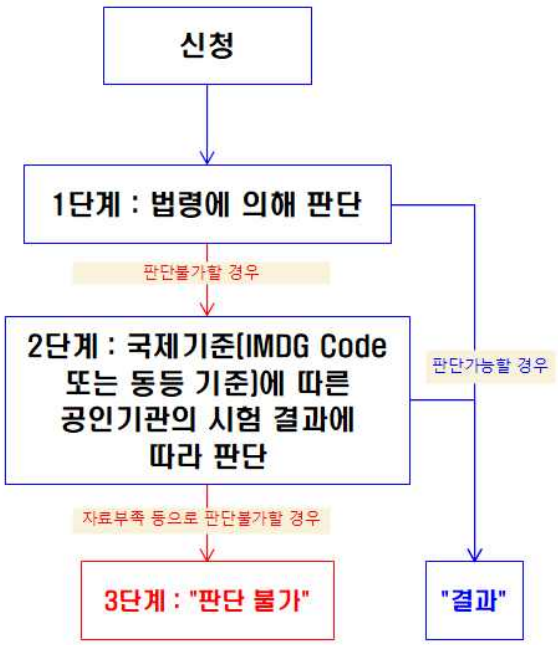
○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

□ 검토 과정

○ 1단계 : 「총포화약법」에 의해 판단

○ 2단계 : 1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, 국제기준(IMDG Code 또는 동등 기준)에 따른 공인기관의 시험 결과에 따라 판단

○ 3단계 : 2단계에서 자료부족 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, “판단불가”



2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

□ 신청 절차



□ 신청 구비서류

○ 제품설명서

– 제품 명칭 및 사용 목적·용도

– 제품 구조도 및 작동메카니즘 설명서

– 화학성분 등에 관한 자료

1) “제품 구조도”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구성 부분마다 구성 부분을 이루는 물질의 화학적 자료(물질명, 분자구조식, 고분자 물질의 경우에는 중합도 및 조성 비율 등)

2) 구성 부분을 이루는 물질이 혼합물의 경우, 각 성분명 및 각성분의 역할, 화학반응식 등

○ 국제기준(IMDG Code 또는 동등기준)에 따른 공인기관의 시험 결과

– 위험물 등급을 판정하는 시험으로서 화약류 해당 여부를 판단한 시험 결과일 것

– 다음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출할 것

1) 산화제와 가연물이 포함된 혼합물일 것

2) 산화제는 아래에 기재된 물질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것

(질산염, 질산에스테르, 염소산염, 과염소산염, 산화납, 과산화바륨, 브로모산염, 황산알루미늄, 디아조디니트로페놀, 무수규산 등)

○ 기타 검토에 필요한 경우 요구하는 자료

○ 수수료 입금 확인증(사본) 1부

3 신청시 유의사항

□ 신청서 작성 방법

○ 신청 구비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작(변환)할 것

○ 전자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제작(변환)할 것

○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할 것

○ 페이지 수를 기재할 것(형식 : 현재 페이지 번호/전체 페이지 번호)

○ 전자파일은 e-mail(exp@gesta.or.kr)로 제출

□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

○ 본 검토 결과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,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○ 제출된 자료부족 등 화약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, '판단 불가'로 통보

○ 보완서류를 요청하는 경우

-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
- 신청서 또는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
- 기타 검토에 필요한 경우,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

○ 접수되지 않는 경우

-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

○ 반려/취하/철회가 되는 경우

- 2회 보완서류 요청 후에도 신청 서류(구비서류 포함)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
- 반려, 취하 또는 철회가 되는 경우, 납부된 수수료 등은 일부만 반환될 수 있음.

4 참고사항

○ IMDG(Th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(IMDG) Code), GHS(화학물질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,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& Labeling of Chemicals) 등에서 정한 위험물등급 판정시험방법 중 화약류(Class 1) 해당여부 시험방법

※ 자세한 내용은 https://www.imo.org 등 참조

○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10, 시행 2021.09.30., 소방청고시 제2021-33호, 2021.09.30., 제정]